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위한 3개 법률 일괄 정비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046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046호)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일괄개정안의 제안 배경	2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4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9
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20
5. 부칙 검토의견	28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046호)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 출 일 : 2024. 06. 27.

다. 회 부 일 : 2024. 06.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일괄개정안의 제안 배경

동 일괄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을 위해 관련 용어 정비 필요성에 따라 추진된 사항임.

2022년 10월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이 중앙지방협력회의¹⁾에 보고되었으며, 지역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정비를 위한 추진계획의 부처 의견조회(2023.2월)를 거쳐 2023년 7월부터 법제처에서 법률 일괄개정안 마련 및 개정을 추진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전 부처 총 85건의 과제가 발굴되었으며 국토교통부 소관은 19건으로, 이 중 2건은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의 검토 결과 현행유지로 결정되었으며 나머지 17건 중 14건은 국토분야 관련 법률²⁾, 3건은 교통분야 관련 법률임.

동 개정안은 이러한 정비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분야의

1) 「지방자치법」

제186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2125360호, 정부 제출, 2023년 11월 13일 제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3개의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먼저,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3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사항을 ‘제출’ 또는 ‘통보’하도록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수직적 관리·감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³⁾.

다음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와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물류단지특별회계의 재원 및 사용처를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자기책임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3) **보고** : 조직 내에서 상하 계층 간이나 부서 상호간 또는 기관 상호간에 법령의 규정 또는 지시나 명령에 의하여 구두, 전화, 전신, 서면 등으로 일정한 의사 또는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하급자(하급기관)가 상급자(상급기관)에게, 즉 수직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의사전달을 하는 경우 보고라 하며, 동일직급이나 동급의 부서간 또는 기관 간 수평적 관계에서의 일정한 의사전달 과정은 통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보고 [報告, report] (경찰학사전, 2012. 11. 20., 신현기, 박억중,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임준태, 조성택, 최미옥, 한형서)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가. 일괄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장이나 군수가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 하도록 하고 있음.

일괄개정안은 시장이나 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 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기초 조사) ①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u>이 경우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u>	제9조(기초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제출</u>----- . <u>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u>

현행	개정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3조 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제5항·제22조제3항 후단·제25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5조4)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⁵⁾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통권역 안의 다른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인근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1. 1. 5.>

1.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2.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부문별 계획

가. 유출입(流出入) 교통대책 및 도로·철도·도시철도 등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나. 교통시설의 개선

다.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라.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마.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

바.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구축

3.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이하 생략)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

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이나 군수는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현행법 제8조6)에서는 시장이나 군수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장이나 군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9조제2항에서는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① 인구 현황. ② 자

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하 생략)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①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5. 22.>

1.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2. 기본계획으로 정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세부 사항
3. 시장이나 군수가 다른 법률에 따른 지방교통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교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하 생략)

동차 보유 현황, ③ 교통시설 현황과 그 이용 실태, ④ 주요 지점 및 교차로에서의 통행량, ⑤ 시외 유입·출입 교통량, ⑥ 차량의 일일 평균 통행속도, ⑦ 사람 및 화물자동차의 통행 실태 등임(「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4항7)).

일괄개정안은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대신 ‘제출’하도록 하는 것임.

현행법 제6조제1항8)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입안하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9)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는 입안한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0조(기초 조사의 내용 등) ④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9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분석하여 이를 11월 말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시·군의 조사·분석 결과를 모아서 1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1. 24.>

1. 인구 현황
2. 자동차 보유 현황
3. 교통시설 현황과 그 이용 실태
4. 주요 지점 및 교차로에서의 통행량
5. 시외 유입·출입 교통량
6. 차량의 일일 평균 통행속도
7. 사람 및 화물자동차의 통행 실태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입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0조(기초 조사의 내용 등)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입안한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즉, 이미 기본계획 등에 관련한 내용은 현행 법령에서도 시장 또는 군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관계가 보고를 받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 관계로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괄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다. 국토교통부 의견

정부-지자체 간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 관계를 설정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및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가.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조항 등 (안 제40조 및 안 제41조)

일괄개정안은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하고, 특별회계의 용도로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및 안 제41조제1항 등).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 운용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제67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8.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6.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차입금 8.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 ·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u><신 설></u>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또는 융자 2.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또는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4. 물류단지지정, 물류시설의 개발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5.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9.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 -----. 1. ~ 6.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6. 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u>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u> ③ (생략)	7. -----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u> ----- ② ----- ----- <u>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3조 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제5항·제22조제3항 후단·제25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검토의견

현행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물류단지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40조제2항¹⁰⁾에 따라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정부의 보조금,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한 과태료, ④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¹¹⁾, ⑤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¹²⁾, ⑥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서의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¹³⁾, ⑦ 차입금, ⑧ 해당

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제67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6.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차입금
8.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1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징수금의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 ⑦ (생략)

⑧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

13)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고 있음.

일괄개정안 제40조제2항제9호는 이러한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특별회계에 포함되는 재원을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현행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특별회계의 용도로 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또는 융자, ②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또는 융자, ③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④ 물류단지지정, 물류시설의 개발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⑤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⑥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⑦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제41조제1항제7호에 따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¹⁴⁾는 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4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업의 사업비,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일괄개정안 제41조제1항제7호는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용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호에서는 특별회계의 용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일괄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개정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특별회계의 용도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신설 또는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¹⁵⁾.

다음으로, 현행법 제41조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비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5)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동 시행령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를 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1군데임. (최종검색일 : 2024.8.9일)

있는데, 일괄개정안 제41조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가 아니라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소관 특별회계의 운용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대한 보고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의 관계를 수평적 협력 관계로 정립하고자 하는 일괄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2) 국토교통부 의견

정부-지자체 간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 관계를 설정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및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및 해제 관련 조항(안 제59조의5제4항 등)

일괄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5제4항 및 안 제59조의6제4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의5(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제59조의4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정비지구를 지정한다. 정비지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제59조의6(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의 해제) ① 시·도지사는 물류 교통·환경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	제59조의5(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통보</u> ----- ---- 제59조의6(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의 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로 보아 정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 계획심의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④ ----- ----- ----- ----- <u>통보</u>-----.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3조 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제5항 · 제22조제3항 후단 · 제25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검토의견

현행법 제59조의4제1항16)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소음·진동·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물류·교통·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제59조의6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일괄개정안은 이처럼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을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를 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수직적 관리·감독 관계가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4(물류·교통·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신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소음·진동·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물류·교통·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아니라 수평적 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과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고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2) 국토교통부 의견

정부-지자체 간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 관계를 설정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및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가. 일괄개정안의 내용

일괄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설정·변경, 특별대책지역 전환교통대책 수립·시행, 특별대책지역 교통물류가격 조정, 특별지역대책의 시행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안 제22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관리하기 위한 지표(이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라 한다) 및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관리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제14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따른 행정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도록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제22조(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전환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거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서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 ----- ----- ----- ----- <u>통보</u>-----. 제22조(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통보</u>-----.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5조(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교통물류가격의 불합리한 부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서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44조(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u>보고</u>)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지역대책의 시행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제25조(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통보-----.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u>통보</u>) ----- ----- ----- ----- 통보-----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현행	개정안
	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3조 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제5항 · 제22조제3항 후단 · 제25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현행법 제1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관리하기 위한 지표(이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현행법 제14조제4항17)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1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관리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도록 한다.

시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한 지속가능성 관리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데,

현행법 제14조제5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음.

다음으로 현행법 제41조제1항18)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자주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현행법 제22조제3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에서 전환교통대책19)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1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특별대책지역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자주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전환교통”이란 기존 교통수단을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하면서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다음으로, 현행법 제25조제3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대책지역에서 교통물류가격²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42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관할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지역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²¹⁾,

현행법 제44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이러한 특별지역대책의 시행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제16조(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를 전환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교통물류가격”이란 교통수단 이용자가 사람이나 화물 운송의 대가로 해당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운임 및 요금과 교통물류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의 대가로 해당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지급하는 통행료 및 사용료 등을 말한다.

2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관할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지역대책(이하 “특별지역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8. 8. 14.>

② 특별지역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1. 특별지역대책의 기본방향
2. 달성하려는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달성 목표
3. 제18조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방안
4.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방안
5.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6. 제22조에 따른 전환교통대책
7. 제23조에 따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방안
8. 제25조에 따른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9. 특별지역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방안
10. 그 밖에 특별지역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하고 있음.

일괄개정안은 이와 같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수직적 관리·감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과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고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특히, 현행법 제7조제5항²²⁾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행법 제9조제4항²³⁾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등 동 법에서의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

2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9조(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도지사에게 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의 관계는 이미 수평적관계로 정립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정부-지자체 간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 관계를 설정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및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부칙 검토의견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3조 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제5항·제22조제3항 후단·제25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제5항·제22조제3항 후단·제25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법률	해당조문	개정안내용	시행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조(기초 조사) 제2항	보고 → 제출	공포 후 6개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물류단지개발 특별회계의 설치) 제2항제9호 신설	특별회계 재원에 조례로 정하는 자원 추가	공포 후 6개월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제1항제7호	특별회계 용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공포 후 6개월

법률	해당조문	개정안내용	시행일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제2항	보고 → 제출	공포한 날
	제59조의5(물류 교통 · 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제4항	보고 → 통보	공포 후 6개월
	제59조의6(물류 교통 · 환경 정비지구 지정 의 해제) 제4항	보고 → 통보	공포 후 6개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제5항	보고 → 통보	공포한 날
	제22조(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제3항	보고 → 통보	공포한 날
	제25조(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제3항	보고 → 통보	공포한 날
	제44조(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보고 → 통보	공포 후 6개월

유사하게 ‘보고’를 ‘통보’로 개정하는 경우에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조제2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5제4항 및 제59조의6제4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4조의 경우에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있는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제5항, 제22조 제3항, 제25조제3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조제2항 및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4조에서는 대통령령²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시설의

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0조(기초 조사의 내용 등) ④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9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분석하여 이를 11월 말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시·군의 조사·분석 결과를 모아서 12월 말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5제4항 및 제59조의6제4항에서는 국토교통부령²⁵⁾에 따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준비기간을 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84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1. 24.>

1. 인구 현황
2. 자동차 보유 현황
3. 교통시설 현황과 그 이용 실태
4. 주요 지점 및 교차로에서의 통행량
5. 시외 유입·출입 교통량
6. 차량의 일일 평균 통행속도
7. 사람 및 화물자동차의 통행 실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0조(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법 제45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지역대책 기간의 시행결과를 종합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22., 2019. 2. 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2. 8.>

1.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개요
2. 특별지역대책의 내용
3. 특별지역대책의 추진실적
4.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 효과
5.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및 효과
6. 향후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관리방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특별지역대책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시·도지사는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59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물류 교통·환경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
2. 그 밖에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사항

제29조의2(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 시·도지사는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했을 때에는 법 제59조의6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영 제46조의7제3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정비지구 해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사항